

## 판 결

사 건  
원 고

손해배상(기)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조효동,

피 고

변 론 종 결

판 결 선 고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,813,000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판 결

사 건

손해배상(기)

원고, 피항소인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, 담당변호사 [Redacted] 조효동

[Redacted]

피고, 항소인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제 1 심 판 결

[Redacted]

변 론 종 결

[Redacted]

판 결 선 고

[Redacted]

## 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